

의안번호	2218001
의 퇴 인	이광희 의원
회 답 일	2026. 5. 12.
추 계 번호	26B18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제1항). 다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단서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43조제4호(동물의 소유권 취득) 신설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음 4.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신 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3조제4호(동물의 소유권 취득) 신설	

2. 상세 사유

□ 피학대동물의 반환 제한 및 소유권 취득(안 제41조 및 제43조)

- 현행법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육계획

서를 제출한 후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 또한,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음
- 개정안은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을 계속 보호조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시·도지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학대동물의 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피학대동물의 건강상태, 월령·종 등에 따라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이하여 보호비용 단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동물보호센터 마리당 운영비용 평균: ('22) 26만원 → ('23) 33.1 → ('24) 43.5 ('24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 1)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